

분쟁재정사건 분쟁조정회부 통지서

사건번호		접수일자
당사자	신청인	
	피신청인	
결정 주문		
조정회부 취지		
안내사항	조정절차	
	조정기일	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 4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재정 사건을 분쟁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

청인